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8.

발 의 자 : 이성윤 · 정동영 · 양부남
김병주 · 김문수 · 서영교
권향엽 · 전현희 · 서미화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.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일례로 내란·외환의 죄의 경우,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·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.

이에 피고인이 내란·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,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

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2조제3항 등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.

1. 피고인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
2.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피고인이 위해·보복·회유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④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・② (생략) <u><신설></u>	第92條(拘束期間과 更新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.</u> 1. <u>피고인이 「형법」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</u> 2. <u>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</u> 3. <u>피고인이 위해·보복·회유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④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

③ (생 략)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